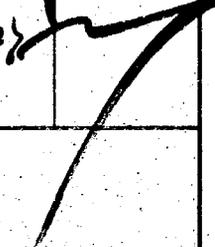


기안용지

분류기호 문서번호	A민150-2240	(전화번호 463)	전결부장 < >	조 / 항 전결사항
처리기간	84.11.	시 민 과 장		
시행일자	84.11.			
보존연한	85.12.31.			
보 조 기 관	문서관리계장 		협 조	반천/재인 
				인원 2명인 
기안책임자	조동수 84.11.			
경 수 합 계	행 정 과 장	발 신	과 장	동 계
제 목	구경으로 작성하여야할 창조업무 현황조사.			
	1. 행정 150-593 (84.11.19)와 관련하여 우리과			
	소관사항을 별첨 서신과같이 제출합니다.			
	첨부: #3. 구경.사업소에서 본과 각과의 협조하여야할 직장대상			
	1부 끝.			
				정서
				관인
			198	발송
			161	151

구청. 사업소에서 본청 각과와 협의해야할 지정대상 업무

일련 번호	협조요청(구.사업소 과표시)	사 무 명	근 거	협조기관 (본청주관과)	소요일
1	구(시민봉사실) 및 산하사업소 (주무과)	관·인교부 신청	관인규정 제5조 서울특별시 관인규칙 제3조	시민과	7

"아껴쓰는 에너지 내집으로 나마른다"

(관인 생략)

서울특별시



행정 150-595

225-7661

84. 11. 19.

수신 수신처참조

제목 본령으로 지정하여야 할 업무업무면허조사

1. 기관간 업무면허조규정(대통령령 11385호 84.3.16자 관보 및 총리령 제286호 '84.6.26자 관보)에따라 서울특별시 중앙부처와 업무면허 업무 서울시 각급기관간 업무면허조규정, 사업소에서 본령으로 업무면허 업무면허를 파악하여 본령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을 시달하오니 기일엄수 보고(총보)함것.

가. 태정 업무

- 서울특별시 각급 중앙부처에 인가, 승인신청, 협의, 동의, 집의, 의견조 회동은 요하는 업무
- 지정 각급간, 또는 규정, 사업소에서 본령, 각각로 요청하는 인가, 승인업무.
- 기타 각급 행정기관사이 또는 보조기관사이에 행하여지는 행정지원 요청사항등.

나.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업무

- 기관간 업무면허 시행규칙(총리령 제286호 '84. 6.26 공포- 관보 제9777호, 71페이지참조) 제7조 1항 범표1에 이미 지정된업무
- 개별 법령에기관간 업무면허에 관하여 업무면허조외내용, 처리기간 처리대상 기관등이 명백히 정해진 업무

다. 조사보고 기간

- '84.11.19- 11.24까지 조사
- '84.11.26까지 행정과장 참조 보고

타. 보고양식 : 별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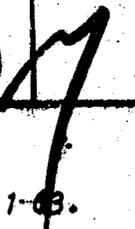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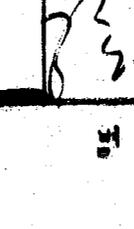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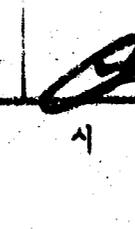
마. 보고서 작성요령

○ 보고양식별 과별 작성

○ 별첨 보고양식 중 3은 업조 요청을 받은 본청 주관과에서 작성(구청, 사업소에서 본청으로 송인, 인가 요청동의 사항기록)

○ 해당사항없는 과에서도 "해당사항" 있음을 표시.

첨부 : 보고양식 (1,2,3) 1부. 끝.

체	민원2계장	민원1계장	문서관리계장	시민과장	결재
					재

서 부 서 장

수신처 : 서과 1-63.

정부공문서규정 제27조 제2항외 규정에의하여

내부국장 은 배영전검



보 고 양 식

36 262

84.

626 9177

서울시에서 중앙부처 협의를 받아야 함 지정대상 업무

7. 19 97962

1

입력 번호	협조요청 기관 (국, 과)	사무명	근거	협조 기관 (중앙 부처명)	소요기입			비고
					회단	회장	적정	
	시민바	구정사업 기초사업	행정자치부 시정	간과부	10	50	30	

* 중앙부처에는 리.침을 포함한다.

2 서울시 각과 상호간 협조해야 함 지정대상 업무

입력 번호	협조요청 과명	사무명	근거	협조기간	소요기입	비고
	각과	민원서비스 추진사업				

3 구정, 사업소에서 본청 각과와 협의해야 함 지정대상 업무

입력 번호	협조요청(구, 사업소) (과표시)	사무명	근거	협조기관 (본청주관과)	소요입	비고
	구정사업 (시민서비스)	관인교부 운영	간과부 제52 시정사업 간과부 제52	시민바	7	

보 고 양 식

서울시에서 중앙부처 협의를 받아야 할 지정대상 업무

1

입면 번호	업종요청 기관 (국, 과)	사무명	근거	업종 기관 (중앙 부처명)	소요 기입			비고
					회단	회장	적정	
	41100	4110000	행정안전 217%	공보부	10	30	25	

• 중앙부처에는 지.청을 포함한다.

2

서울시 각과 상호간 협조해야 할 지정대상 업무

입면 번호	업종요청 과명	사무명	근거	협조 기관	소요 기입	비고
	각청과	민생서비스 21155000 민				

3

구청, 사업소에서 본청 각과와 협의해야 할 지정대상업무

입면 번호	업종요청(구, 사업소 (과표시))	사무명	근거	협조 기관 (본청주관과)	소요 기입	비고

부 권 자

수신 서울시정물국장

1945년 11월 14일

참조 편이국장

제목 부계은행 수기 발급 요청

1. 별기 2039-3713(84. 11. 14)호에

관한바입니다.

저희은행은 부계은행으로부터 수기 발급을 요청함에 따라 부계은행에서 수기 발급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밝혀내지 않고 이사가 되었습니다.

서	계	장	부
			김재

발신 기 민 국 장

기안용지

분류기호 분시번호	4010-2240	(전화번호 463)	권·결·규·정 과 장	조 / 함 인결사항
처리기간	84.11. 시 민 과 장			
시행일자	84.11. 90			
보존연한	85.12.31.			
보 조 기 관	문서관리계장 ㄱ		함	만원/계/인 인원/계/인 인원/계/인
			조	
기안배위사	순동수 84.11.			
경 수 참	유 신 조	행 경 과 장	발 신	과 장
제 목	본청으로 자청하여야 할 형조업무 현황조사. 1. 행정 소-1안조 (84.11.19) 와 관련하여 우리과 소관사항을 별첨 서류과같이 제출합니다.			
첨부: #3. 구청.사업소에서 본청 각과와 협의하여야 할 자청대상업무 1부 끝.				
				경서
				관인
				발송

구청. 사업소에서 본청 각과와 협의해야할 지정대상 업무

일련 번호	협조요청(구.사업소 과표시)	사 무 명	근 거	협조기관 (본청주관과)	소요일
1	구(시민봉사실) 및 산하사업소 (주무과)	관·인·교·부·신·청	관인규정 제5조 서울특별시 관인규칙 제3조	시민과	7

"아끼스는 에너지 넘치고 낙관적이다"

(관인 생략)

서 울 특 별 시



행정 150-595

3225-7661

84. 11. 19.

수신 수신서참조

제목 혼령으로 지정하여야 할 업종업무 현황 조사

1. 기관간 업무협조구정(대통령령 11385호 84.3.16지 관보 및 총리령 제286호 '84.6.26자 관보)에따라 서울특별시 중앙부처와 업종업무 서울시 각급기관간 업종업무,구청,사업소에서 본적으로 업종업무를 파악하여 혼령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을 시달하니 기입업수 보고(총보)함것.

가. 태성업무

- 서울특별시 각급 중앙부처에 인가,승인신청,협의,동의,협의,외견조외동용 요하는 업무
- 시청 각과간, 또는 구청,사업소에서 본성,과과로 요청하는 인가, 승인업무.
- 기타 각급 행정기관사이 또는 보조기관사이에 행하여지는 행정지원 요청사항등.

나. 조사대상에서 제외업무

- 기관간 업무협조 시행규칙(총리령 제286호 '84. 6.26 공포- 관보 제9777호, 71페이지참조) 제7조 1항 범표1에 이미 지정된업무
- 개별 법령에기관간 업무협조에 관하여 업무협조의내용, 처리기간 처리대상 기관등이 명백히 정해진 업무

다. 조사보고 기간

- '84.11.19- 11.24까지 조사
- '84.11.26까지 행정과장 양조 보고

마. 보고양식 : 별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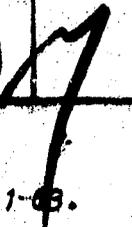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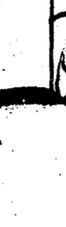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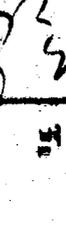
나. 보고서 작성요령

○ 보고양식별 과별 작성

○ 별첨 보고양식 3은 업종 요청을 받은 본청 주관과에서 작성(구청, 사업소에서 본청으로 승인, 인가 요청동의 사항기록)

○ 해당사항없는 과에서도 "해당사항" 없음을 표시.

첨부 : 보고양식 (1,2,3) 1부. 끝.

계	민원2계장	민원1계장	유사관리계장	기 민 과장	결재
					

서 부 관 시 장

수신처 : 서과 1-63.

정부공문서 규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

내무국장 문밖영전



제출 PV. 7.16

96 902

626 9777

PV.

7.19 97962

보고양식

서울시에서 중앙부서 협의를 받아야 할 지정대상 업무

1

입력 번호	업종요청 기관 (국, 과)	사무명	근거	업종 기관 (중앙 부서명)	소요 기일			비고
					희단	희장	적정	
	시민라	주공임대 비상임대	무량가제 반제33 728	상관부	10	50	30	

* 중앙부서에는 이, 청을 포함한다.

2

서울시 과과 상호간 협조해야 할 지정대상 업무

입력 번호	업종요청 과명	사무명	근거	업종기관	소요 기일	비고
	각청과	민원서비스 32145678 민				

3

구청, 사업소에서 본청 과과와 협의해야 할 지정대상 업무

입력 번호	업종요청(구, 사업소) (과표시)	사무명	근거	업종기관 (본청주관과)	소요 기일	비고
	구 및 2222사업소 (3224) (시민서비스)	관인라 민	2222 2222 2222 2222	시민라	7	

보 고 양 식

서울시에서 중앙부처 협의를 받아야 할 지정대상 업무

1

입력 번호	업종요청 기관 (국, 과)	사무명	근거	업종 기관 (중앙 부처명)	소요 기입			비고
					최단	최장	적정	
	지인리	...	법제33 276	공공부	10	30	25	

~~11~~ ~~법제33~~

* 중앙부처에는 지,청을 포함한다.

2

서울시 과과 상호간 협조해야 할 지정대상 업무

입력 번호	업종요청 과명	사무명	근거	협조기간	소요 기입	비고
	국정실	민생실 ...				

3

구청, 사업소에서 본청 과과와 협의해야 할 지정대상업무

입력 번호	업종요청(구, 사업소 (과표시))	사무명	근거	협조기관 (본청주관과)	소요 기입	비고

165